탄 원 서

항소심 제출용 · 개별 형사책임 심리와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시민 탄원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재판장님 및 재판부 귀중
사건 2026노648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고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원 취지 무죄 판단 요청 및 예비적 형 감경 탄원

---

1. 탄원을 올리는 이유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조지호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국회를 향한 군과 경찰의 동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 제한은 헌법질서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헌법기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이 중대성을 축소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라도 지위가 높으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중대하다는 판단과 특정 피고인에게 어느 범죄가 어떤 정도로 성립하는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사건 전체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모아 묻는 절차가 아니라, 누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으며 그 지시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증거로 확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판단을 유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존중하되,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그것까지 끝까지 심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 1심의 불리한 판단을 정확히 마주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제1심은 조지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선고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에 군의 국회 투입 계획을 알게 된 점, 경찰을 이용한 국회 출입 차단과 군의 진입 협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경찰력 배치 관여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서도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 경위와 국회 권한 침해가 상세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단을 단순히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오후 7시 20분 무렵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사전 회동, 오후 10시 48분 무렵 시작된 출입 차단, 오후 11시 6분경의 신분 확인 후 출입 허용, 오후 11시 23분경의 포고령 발령과 오후 11시 37분경 재차단은 어느 한 장면만 떼어 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오후 11시 37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까지 출입을 다시 제한한 사정은 특히 불리합니다. 시간과 명령의 연결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도 각 단계의 인식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계엄을 안 것’과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한 것’ 사이를 증거로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87조 제2호 및 제91조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계엄 인식이나 직무상 지위가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고 중요한 임무에 관여했는지입니다. 국회 출입 차단이 객관적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정황은 고의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추론의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고, 그 내용에 어떠한 대응을 했으며, 실제 지시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회동에서 받았다는 출동 장소·시간 기재 문서, 포고령의 내용을 전해 들은 경로, 대통령이나 군 지휘부와의 통화 내용, 서울경찰청에 전달된 개별 지시를 같은 무게의 자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도달 시점·표현·상대방·후속 행동을 종합하여, 계획의 작성이나 결정에 참여한 경우와 급박한 과정에서 사후 지휘한 경우 사이의 법적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분이 아니라 책임을 정확히 정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4. 국회 봉쇄·체포조 지원 요청·선관위 배치를 서로 분리해 살펴 주십시오

국회 주변 경찰력의 배치와 출입 통제, 방첩사 측의 수사관·인력 지원 요청,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경력 배치는 서로 다른 사람과 지휘계통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행위까지 동일한 지시나 실행이 있었다고 추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체포 관련 지원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대상과 목적을 알려 주었는지, 피고인이 실제 승인·변경·거부한 부분은 무엇인지, 요청된 인력이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조지호 피고인 측은 일부 체포·위치확인 관련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고, 경력 증원과 차벽 설치 등에도 하급 지휘부의 독자적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사전 회동 이후 경찰력 배치 및 두 차례 차단, 계엄군의 진입 허용이 국회 기능을 막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반박합니다. 변호인 주장만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여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쪽 주장을 각 통신자료, 명령기록, 현장 증언과 나란히 놓고 판단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독립적으로 심리해 주십시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된 직권의 내용, 그 남용의 태양, 누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어떤 권리행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와, 경찰 지휘부의 각 지시가 법률상 어떤 의무 관계를 변경했는지를 구별해 주십시오. 내란죄의 고의 판단과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판단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동으로 일치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6. 유죄가 유지된다면 형의 정도를 다시 헤아려 주십시오

1심은 피고인이 계엄을 처음부터 기획한 주체는 아니었고 계엄 당일에 군의 출동 사실을 알게 된 점, 출입 차단의 시간과 개별 지시 범위, 오랜 경찰 공직생활, 범죄 전력 부재, 혈액암 등 건강상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참작된 사항을 새로 발견한 사정처럼 제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유죄를 판단하시더라도 실제 가담 범위와 지위에 따른 책임, 행위별 기여도와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함께 비교하여 형벌의 균형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는 추상적인 동정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진단서, 치료계획, 구금 중 치료의 가능성과 어려움 같은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평가하여 주십시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거나 계엄의 기획·설계에 관여했다는 별도의 사실은 그에 관한 증거가 있을 때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느 사정을 감경 사유로 볼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맡깁니다.

7. 맺음말

저는 국회를 향한 물리적 통제가 남긴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재판의 공정함은 사회적 분노의 크기로 피고인의 죄책을 대신 정하지 않고, 증거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각자의 책임을 묻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조지호 피고인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과 중요한 임무 수행, 각 지시의 실제 범위, 직권남용죄의 개별 요건을 엄격하게 심리해 주십시오. 그 결과 유죄의 증명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에는 무죄를, 유죄가 유지되는 부분에는 실제 책임에 상응하면서도 인도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형을 내려 주시기를 정중하고 간절하게 탄원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실제 제출 시 기재사항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십시오.